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20일,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3.27.)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종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도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도의원지역구의 확정 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원칙(3:1)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 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접경·도서지역은 지속적으로 선거 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주민의 정 치적 대표권이 실질적으로 축소·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지방의회는 지역현안을 가장 밀접하게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중심 의 선거구획정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분권 원칙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규모와 관계 없 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원지역구 확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시·도의원지역구를 획 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 도록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방 지하고,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회부(2026.03.27.)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